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210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210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 등의 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yale01@korea.kr
- 팩스: 043-719-34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호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12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 마목에 따른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의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하지 말 것

- 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 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할 것
 3.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4. 혼합·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5.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
 6.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은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
 7.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소분하여 보관하지 말 것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